

퇴직연금 계약해지 신청서(개인형IRP)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전 산 인 자 란

20 년 월 일

1.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퇴직연금 계좌번호		연락처	

2. 해지사유

일반사유	<input type="checkbox"/> 일반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사망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요양 <input type="checkbox"/> 개인회생 및 파산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 ※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지급) 신청서(퇴직연금)' 추가 작성

3. 입금 받는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의사항 안내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평가 금액이 아닌 상품별 일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오니, 만기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됩니다.

구분	소득 원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① 과세제외금액	당해년도 납입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매년 납입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한도초과 금액		
	기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② 퇴직소득	퇴직금	이연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x 7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분 60%)
③ 과세대상소득	소득(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 ~ 5.5%)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3. 연금개시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 ※ 연금수령한도 이내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 : 원천별 과세
- ※ 단, 연금소득세로 계산되는 부분 중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 재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연1,500만원 초과시 다음 해 5월 종합과세 합산과세 또는 16.5% 단일세율 적용 중 선택

- 퇴직연금은 지급신청과 동시에 자금수령이 불가하며 운용중인 모든 상품(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의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손님의 운용상품별, 지급신청 시간대별로 실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계약해지에 관한 과세부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상품에 따른 해지소요일에 대해 이해하였기에 본 신청서로 퇴직연금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